

case
6

공기청정기

요약

사례명	공기청정기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03177 (2020.05.04.)
사실관계	<p>시나리오 1 멕시코산 부품(탄소 전처리 필터, 헤파 필터) 및 중국산 부품(팬 블레이드, 모터, 소형 전기부품 등)을 인도네시아로 수입한 후 인도네시아에서 제조된 플라스틱 부품, 실리콘 부품, 금속 부품, 포장 부품과 함께 다음의 공정을 수행하여 공기청정기 생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형 부품 부분 조립 2) 외국산 재료 추가 가공 3) 19단계에 걸쳐 서브 어셈블리 조립 및 완성품 최종 조립 4) 테스트 및 포장 <p>시나리오 2 시나리오 1과 제조 과정 및 부품 수입 후 조립 과정은 동일하나 플라스틱 부품을 인도네시아가 아닌 중국에서 제조하여 수입함</p>
쟁점 및 판정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p>시나리오 1 인도네시아에서 수행된 플라스틱 부품의 사출 성형, 주요 부품 및 서브 어셈블리 조립, 테스트 및 포장이 수입된 구성요소들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킬 만큼 충분히 복잡하고 의미 있는 공정이란 판단하여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판정함</p> <p>시나리오 2 주요 부품(플라스틱 부품, 팬, 모터, 전자 부품)이 중국에서 제조되지만, 인도네시아에서의 전체 생산 공정에는 50명 이상의 근로자 및 감독자가 투입되며, 최종 제품 완성을 위해 150개 이상의 전기 및 비전기 부품을 조립하는 데 약 60분이 소요되는 등 광범위하고 복잡한 공정이 수행되므로 인도네시아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함</p>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I 판정사례⁴⁾

사 례 명 [공기청정기]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03177 (2020.05.04.)

사실관계

요청자	Sunbeam Products, Inc (대리인: Sandler, Travis & Rosenberg, P.A.)	
제품명	• Holmes® True HEPA Allergen Remover (모델 번호: HAP8650)	
제품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팬 • 탄소 전처리 필터(carbon pre-filter) • 3개의 헤파 필터 • 플라스틱 부품 등
	용도	• 가정용 먼지, 연기, 곰팡이 등과 같은 공기 중 알레르겐 및 오염 물질의 제거나 냄새 감소용

제조과정



상세공정

시나리오 1

✓구성요소

부품명	제조국
• 탄소 전처리 필터, 헤파 필터	멕시코
• 소형 전기부품, 전원 코드, 하우징 자석, 금속 브래킷, 튜브 클립, 패스너, 인쇄회로기판(PCB), 팬 블레이드, 모터, 3M 테이프, 박스, 발포 포장재 등	중국
• 플라스틱 부품(하우징 구성품, 제어판, 스위치 커버, 스위치 박스, 손잡이, 브래킷 등) • 실리콘 부품(절연재, 와셔 등) • 금속 부품(나사 및 너트, 단자 캡, 무연 납땜 와이어 등) • 포장 부품(인쇄 스티커, 라벨, 제품 설명서, 포장재 등)	인도네시아

4)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 ✓ 인도네시아 제조 공정 (50명 이상의 근로자 및 감독자가 약 60분에 걸쳐 150개 이상의 부품을 가공 및 조립)
 1. 플라스틱 부품, 실리콘 부품, 금속 부품, 포장 부품 제조
 2. 소형 부품 부분 조립
 3. 외국산 재료 추가 가공
 4. 19단계에 걸쳐 서브 어셈블리 조립 및 완성품 최종 조립 수행(단계별 테스트 수행)
 5. 완성품 미국 수출

시나리오 2

- 시나리오 1과 제조 과정 및 부품 수입 후 조립 과정 동일
- 다만, 플라스틱 부품의 사출 성형이 중국에서 수행되고 이를 인도네시아로 수입함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1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27 C.C.P.A. 267 (1940)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부품이나 재료의 결합이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지 판단할 때 핵심 쟁점은 수행된 작업의 범위, 해당 부품이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제품의 필수 구성요소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임

❖ 참고 판례: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573 F. Supp. 1149 (Ct. Int'l Trade 1983), *aff'd*, 741 F.2d 1368 (Fed. Cir. 1984)

- 반면, 제조 또는 결합 공정이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982)

관련 법령
및 분석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circumstances)하여 사례별(case-by-case)로 이루어지며, 이때, 부품들의 원산지, 해당 국가 내에서 수행된 가공의 범위, 가공으로 인해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가진 제품으로 변화했는지 여부 등을 주요 고려 요소로 삼음
- 신청인은 소형 부품 부분 조립, 특정 부품 추가 가공, 최종 제품 조립 등의 공정이 모두 인도네시아에서 수행되었으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인도네시아라고 주장하면서 HQ 557331, HQ 962528, NY 227976, NY N301616 사례를 인용하였으며, CBP는 해당 사례들을 검토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557331 (1993.09.09.)*

- 사례** 커피메이커의 GSP 무관세 자격 판정 사례로서, 미국산 플라스틱 펠릿을 멕시코에서 부품으로 사출 성형한 후, 이 부품들을 미국산 구성요소와 함께 멕시코에서 조립하여 최종 제품 생산
- 판정** 멕시코에서 사출 성형 과정에서 열 사출이 발생한다는 점과 여러 구성요소가 멕시코에서 조립된다는 점을 근거로, 중간재에서 최종재로 조립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하지 않을지라도 총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함 (**멕시코산**)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962528 (2020.02.18.)*

- 사례** 정전 표시등(power failure light)의 GSP 무관세 자격 판정 사례로서, PCB를 포함한 여러 태국산 부품과 기타 외국인산 부품을 태국에서 조립하여 완성함
- 판정** 여러 부품을 조립하여 PCB를 만드는 과정과 PCB를 전구 홀더 어셈블리, 플러그 블레이드 어셈블리, 상·하부 하우징 어셈블리와 결합하여 최종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킨다고 판정함 (**태국산**)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227976 (2012.08.22.)*

- 사례** 독일산 다결정 태양전지, 일본산 전면 시트, 기타 중국산 부품을 중국에서 조립하여 태양광 패널을 생산
* 본 판정은 HQ H298653 (2018.11.19.) 결정에 의해 실질적 변형 분석과 원산지판정 부분이 수정됨
- 판정** 수정된 결정(HQ 298653)에서 CBP는 독일산 태양전지가 태양광 패널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한다고 판단하였고 중국에서 다른 부품과 결합되는 과정에서 그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종 제품의 원산지를 태양전지의 원산지인 독일로 판정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01616 (2018.12.04.)*

- 사례** 전구 및 전선을 포함하는 중국산 부품을 캄보디아로 수입한 후 기타 캄보디아산 부품과 조립하여 스트링 조명 세트로 완성

캄보디아 제조 공정	
1	중국산 플라스틱 펠릿을 램프 홀더와 램프 하우징으로 성형
2	전구를 연결하고 완성된 램프 조립 기계에서 램프를 제작
3	전선 절단
4	램프 소켓, 플러그 및 커넥터 조립
5	모든 부품을 연결하여 스트링 제작
6	전선을 절단 및 피복 제거한 후 단자에 고정하고 시험 및 포장 수행

- 판정** 개별 부품들이 캄보디아에서의 조립 과정을 통해 각각의 부품에는 내재되어 있지 않았던 뚜렷한 성격과 용도를 가진 새로운 상업적 물품이 창출되었으므로, 캄보디아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함 (**캄보디아산**)

- CBP는 신청인이 인용한 사례 검토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아래의 판례 및 판정 사례를 인용함

❖ 참고 판례: *Uniden America Corporation v. United States*, 24 CIT 1191, 120 F. Supp. 2d 1091 (2000)

사례 무선 전화기를 생산하기 위해 여러 기타 부품들을 조립하는 작업과 탈착식 교류(AC) 어댑터를 설치하는 작업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판결 CIT는 '성질(character)'이라는 용어를 개별 물품을 구성하고 일반적으로 구별하는 구조, 형태, 재료 또는 기능의 본질적 요소 중 하나로 정의하면서, 전화기의 본질은 본체와 수화기에 있으며, 소비자는 AC 어댑터의 특정 기능 때문에 그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수화기와 본체가 제공하는 통신 기능 때문에 구입하므로, 수화기와 본체 조립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만 AC 어댑터 설치는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3529 (2019.06.06.)*

사례 미완성 우편 요금계기 생산을 위한 주요 서브 어셈블리 중 하나는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되었으나, 나머지 서브 어셈블리들은 중국에서 제조되었고, 이들 서브 어셈블리를 연결하여 최종 조립하는 과정 역시 중국에서 이루어짐

판정 중국에서 조립 공정뿐만 아니라 일부 서브 어셈블리 또한 제조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국에서 행해진 공정이 충분히 광범위하며 복잡한 것으로 판정하여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정함

판정 결과

☑ **시나리오 1** 인도네시아에서 수행된 플라스틱 부품의 사출 성형, 주요 부품 및 서브 어셈블리 조립, 테스트 및 포장에 수입된 구성요소들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킬 만큼 충분히 복잡하고 의미 있는 공정이라 판단하여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판정함

- 인도네시아에서 수행된 공정들은 HQ 557331 및 NY N301616 사례와 유사하게, 플라스틱 성형과 조립이 단일 국가 내에서 수행됨

- 특히 플라스틱 부품은 완성된 장치의 구조와 외관을 형성하므로 완제품의 성격과 용도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하우징과 외부 요소가 없다면 수입된 부품들은 가정용 공기청정기로 식별되거나 사용될 수 없음

- 팬과 필터가 공기청정기의 주요 구성요소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팬, 모터, 전자 부품, 하우징, 외부 요소로 구성된 콘솔은 필터가 삽입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Holmes® True HEPA Allergen Remover로 식별 가능하며, 콘솔만으로도 최종 제품의 기본적인 구조, 외관, 작동 능력이 제공됨

- 일부 중요한 부품들이 중국산일지라도, 이러한 부품들이 멕시코산 필터 및 인도네시아산 부품들과 조립되면서 개별 부품들의 개별적 정체성은 상실되고 새로운 물품의 필수적 부분으로 변형된다고 판단함

☑ **시나리오 2** 콘솔의 주요 부품(플라스틱 부품, 팬, 모터, 전자 부품)이 중국에서 제조되지만, 인도네시아에서의 전체 생산 공정에는 50명 이상의 근로자 및 감독자가 투입되며, 최종 제품 완성을 위해 150개 이상의 전기 및 비전기 부품을 조립하는 데 약 60분이 소요되는 등 광범위하고 복잡한 공정이 수행되므로 인도네시아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함

결론

- ✓ 시나리오 1: 주요 부품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부품이 인도네시아산이고 인도네시아에서의 조립 과정이 충분히 복잡하고 의미 있으므로 공기청정기의 원산지는 인도네시아임
- ✓ 시나리오 2: 대부분 주요 부품이 중국산이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조립 과정이 충분히 복잡하고 의미 있으므로 공기청정기의 원산지는 인도네시아임

II 시사점

- 사안의 공기청정기와 같이 여러 부품 및 공정이 수반되는 경우, CBP는 주요 부품의 원산지 같은 개별 요소만으로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주요 부품의 성격, 전체 공정의 복잡성, 노동 투입 정도 등의 요소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제품의 본질이 어디에서 구현되었는지를 검토함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03177 (2020.05.04.), <https://rulings.cbp.gov/ruling/H303177>
- CBP Ruling HQ 557331 (1993.09.09.), <https://rulings.cbp.gov/ruling/557331>
- CBP Ruling HQ 962528 (2020.02.18.), <https://rulings.cbp.gov/ruling/962528>
- CBP Ruling NY 227976 (2012.08.22.), <https://rulings.cbp.gov/ruling/227976>
- CBP Ruling HQ H298653 (2018.11.19.), <https://rulings.cbp.gov/ruling/H298653>
- CBP Ruling NY N301616 (2018.12.04.), <https://rulings.cbp.gov/ruling/N301616>
- CBP Ruling HQ H303529 (2019.06.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3529>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1984),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309750/belcrest-linens-v-united-states/>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Uniden America Corporation v. United States (200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819429/uniden-america-corp-v-united-states/>